

Jisung Horizon Newsletter

November 2008 Vol.1. No.2

01 법률칼럼

- PF 건설사업 위기에 대한 단상 (이행규 변호사)

03 해외통신

- 왜 올림픽에서는 영국 축구팀을 볼 수 없을까
(박용대 변호사)

06 열려라 중국

- 중국의 매출채권 담보 제도 (명한석 변호사)

08 생생 러시아

- 러시아 가스산업 및 석유산업의 이해 (마명원 변호사)

12 Vietnam LIVE!

- 베트남 법률과 실무의 괴리 (한승혁 호주변호사)

14 주목! 이 판례

- 내기골프의 경우 도박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6도 736 판결)

19 최신법령

-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마련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
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
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
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
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
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
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20 지평지성 소식 및 단신

-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8년 가을 체육대회 개최
-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8년 가을 산행
- 이호원 대표변호사, “변호사 의무전문연수 인정을 위한 제1회 중재실무연수과정” 강연
- 최승수 변호사,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발전 위한 토론회’ 발제
- 김성수 변호사, 서울시 법률고문으로 위촉
- 김범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 연구발표회’ 발표 / ‘게임기업법무전문가 양성강좌 - 지적재산권법’ 강의
- 이소영 변호사, ‘케이블TV 저작권 워크샵’ 강의
- 정철 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 박성철 변호사,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 담당자 워크숍’ 강의
- 노상범 전문위원, ‘한국채권연구원 제7기 고급 PF전문가 과정’ 강의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의
- 지평지성 변호사, 연극‘쉬어 매드니스’ 공연

29 영입인사

- 김희석 변호사
- 원성철 중국변호사



지평지성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종로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02-6050-1600 FAX: 02-6050-1700 <http://www.js-horizon.com> E-mail : master@js-horizon.com
Copyright ©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칼럼)

PF 건설사업 위기에 대한 단상



이행규 변호사

Project financing 건설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국내 건설, 주택 금융시장은 미국의 그것과는 달라 서브 프라임과 같은 부동산발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과 전망을 이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PF 건설사업 부실은 건설산업은 물론 금융산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40~60%의 LTV(Loan to Value) 통제를 통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법과 접목되어 진행되어 온 건설 project financing은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경색 및 연이은 실물경제 침체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건설업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그것만으로 PF 건설사업의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의 PF 건설사업에 주로 대출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들의 추가 부실화는 금융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무인수, 자금보충약정, 책임준공, 시행권 인수, 담보신탁 실행 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얹힌 이해관계자들간에 분쟁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할인분양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설사들은 기존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PF 건설사업 관련 분쟁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법원이나 행정청의 선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시장참여자들이나 법률가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PF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수적인 사업약정, 대출약정 등의 체결과정에서 오로지 대주단을 자문하는 법률대리인만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흔치 않지만 일부 건설사는 자체 법률대리인을 대동하기 함). 이유는 1차적으로 비용 문제겠지만, 법률자문의 필요성에 대한 건설사의 마인드가 부족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형식적인 사업주체인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자문하는 법률대리인이 부재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국내 시행사의 경험이나 협상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대주단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의 법률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만 형식적, 법률적으로 당해 법률대리인은 대주단의 입장에서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관계가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refinancing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 할 경우 건설사, 대주단, 시행사 모두 이해관계가 달라 이미 체결한 사업약정, 대출약정의 해석과 대응방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PF 약정을 주도했던 법률대리인은 이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자문을 요청받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자문이 PF 약정 체결 과정과 같이 나름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의 PF 건설사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PF 건설사업이 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성찰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대한상공회의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세미나(주1)에서 이러한 문제들도 건설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Jisung Horizon

※(주1)

PF건설사업의 위기에 대한 세미나에 대한 안내 및 초청장은 11월 17일(월)~ 18일(화)동안 이메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보팀 전화 02-6050-0741, 이메일 master@js-horizon.com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해외통신)

왜 올림픽에서는 영국 축구팀을 볼 수 없을까



박용대 변호사

4개의 축구협회가 존재하는 특이한 나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최근 세계 각 대륙에서 월드컵예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대륙도 53개팀이 9개 그룹으로 나누어 본선진출권을 얻고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는 1팀이 출전하는 어느 보통 국가들과 달리 국가명이 "The United Kingdom"인 영국은 4개의 축구팀이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가 그 4팀입니다. 이들 4팀이 대표하고 있는 곳은 외교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독립된 국가들이 아닙니다. 모두 "The United Kingdom"에 소속된 지역들입니다.

영국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1개의 축구협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4개의 각각 독립된 축구협회가 있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영국은 FIFA가 처음 창설될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FIFA로부터 4개의 축구협회를 모두 독립된 회원국으로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월드컵에 참여하기 시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리그도 4개 지역별로 별도로 존재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어리그는 엄밀히 말하면 영국 축구리그가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리그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드컵본선에서 보는 잉글랜드팀은 영국("The United Kingdom") 국가대표팀이 아닙니다. 영국의 4팀 중 하나인 잉글랜드팀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4팀 중 잉글랜드팀만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우수한 실력을 지니고 있는 잉글랜드가 그래도 월드컵 본선에 가장 많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팀도 8회나 본선 진출을 할 정도로 녹녹하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 2010년 월드컵 본선진출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과 달리 올림픽에서는 영국 축구팀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올림픽은

월드컵과 달리 한 나라에서 4개의 축구팀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영국의 4개 지역도 하나의 대표팀을 구성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2년 올림픽이 런던에서 열리는데, 영국 내에서는 그 올림픽에는 영국 축구팀이 참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아직까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과연 영국 축구팀을 볼 수 있을지, 재미있게 지켜볼 점입니다.

1개 나라 4지역인가, 4개의 나라인가?

영국인들의 축구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영국에서는 축구협회가 4개나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English legal system'이라고 하면 '영국 전체'의 legal system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의 legal system을 뜻합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 웨일즈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교육제도도 잉글랜드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코틀랜드에서는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립하여 발행된 화폐도 잉글랜드나 웨일즈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각 지역의 독립성, 그리고 그로 인한 독자성을 띤 제도들로 인해 영국에 관한 질문은 쉽게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에는 100파운드의 지폐가 존재하나요?"라는 질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50파운드가 가장 고액의 지폐입니다. 환전을 위해 우리나라 은행을 가 보아도 100파운드의 화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는 100파운드의 지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를 비롯한 다른 지역 등에서는 쉽게 발견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100파운드의 화폐는 잉글랜드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 지역의 독립성은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영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영어는 발음, 억양 등에서 독특하고, 심지어 어휘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같은 영국인인 잉글랜드 사람조차도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스코틀랜드인 스스로 그 방언을 즐겨 사용하며 자랑스러워 할 뿐, 그 방언을 대신하여 현대의 영어로 통일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또한 잉글랜드나 영국의 다른 지역들과 구별되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독자성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많은 스코틀랜드인들은 잉글랜드인들을 '우둔하고 소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강건하고 외향적이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웨일즈의 경우에는 법제도 등 많은 제도들을 잉글랜드와 같이 하고 있어 그 독자성이 스코틀랜드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웨일즈 지역 인구의 20% 이상(50만명이 넘는 수)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고, 영어와 구별되는 웨爾시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잉글랜드와 구별되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각 방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이 법률적, 문화적, 언어적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4개의 나라를 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호기심이 들어 대학강사인 영국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국인들은 4 지역을 독립된 별개의 나라로 느끼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나라 속에 조금은 독자성이 있는 4개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 대학강사의 대답은 “대단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국인들 스스로는 외국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로 4지역의 독립성을 생활 속에서 강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The United Kingdom'과 'England', 'British'와 'English'

영국의 이런 유별난 지역적 독립성을 감안할 때 영어 사용을 함에 있어 조금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한영사전에는 'England'를 넓은 뜻으로 영국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영국 전체 또는 영국 국가를 'England'로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영국인들은 'England'를 자신들의 국가인 '영국'을 표현하는 어휘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The United Kingdom'('UK')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England'라고 하면 'UK'에 속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과 구별되는 한 지역인 'England'로 인식할 뿐입니다. 또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모든 지역을 포함한 '영국적인', 또는 '영국인'들을 표현하는 영어로 'British' 또는 'The British'를 사용하지, 'English'나 'The English'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Great Britain'('GB')이라는 표현도 많이 듣고 보게 되는데, 이는 영국('UK')에서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위치한 큰 섬을 의미하거나 또는 그 세 지역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Jisung Horizon

※박용대 변호사는 현재 영국에 있는 'King's College London'에서 연수중입니다.

(열려라 중국)

중국의 매출채권 담보 제도



명한석 변호사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금융경색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등의 담보가치 있는 실물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생산, 판매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 매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물권법(이하 ‘물권법’)에 따르면 예금통장, 인도지시서(提單), 매출채권(應收賬款) 등과 ‘법률, 행정법규에서 질권이 설정이 가능하다고 한 기타 재산권리’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권법 제223조).

물권법을 근거로 중국인민은행에서는 매출채권의 질권 설정에 대한 규정- 매출채권 질권 설정 등기 관리방법(이하 ‘등기규정’)- 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규정에 의하면 매출채권이라 함은 물품, 서비스 혹은 시설 제공으로 대금지급의무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현재와 장래의 금전채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물품 판매, 전기 공급 등으로 발생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등기 규정 제4조).

매출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권자 및 질권설정자가 서면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등기기관에서 질권설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질권은 등기 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물권법 제228조). 한편,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질권설정 계약 외에 당사자가 별도로 '질권설정등기 진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에는 '질권설정 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질권자가 질권 설정 등기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등기규정 제8조). 매출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기관 : 중국인민은행장신센터(徵信中心) (이하 '등기센터') (등기규정 제2조), 등기센터에서는 등기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질권등기를 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등기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같은 조항).
- 등기의무자 : 질권자(등기 규정 제7조), 위임이 가능합니다.
- 등기 내용 (등기규정 제 10조) :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정보,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등기기간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인 경우는 법정등록명칭, 등록주소지,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 성명, 조직코드, 공상등록코드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타: 등기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시간에 따라 등기코드를 배분하여 질권 설정의 원시등기증명으로 하며 동시에 질권설정자에 수정코드를 부여합니다(등기규정 제11조).

등기센터는 상하이에 소재하며, 인터넷으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매출채권등기는 인터넷 접수가 유일한 방식이며 전국의 모든 매출채권은 모두 이 등기시스템에 접속하여 등기하는 바 지역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출채권 질권 등기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매출채권 유동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Jisung Horizon\]](#)

(생생 러시아)

러시아 가스산업 및 석유산업의 이해



마명원 변호사

1. 서론

러시아 가스산업 및 석유산업을 주도하는 양대 축은 국영기업인 가즈프롬(Gazprom)과 로스네프트(Rosneft)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 전대통령(2000-2007)은 집권시절 엘친 전대통령(1992-1999)시절 민영화되었던 에너지기업을 재국유화하였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상하부문을 통합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즉, 푸틴은 러시아 천연가스 산업의 첨병으로 가즈프롬(Gazprom)을, 석유산업의 첨병으로 로스네프트(Rosneft)를 삼아 에너지산업을 이끌며 한편으로 국가통제를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가스산업 및 석유산업의 현주소는 가즈프롬(Gazprom)과 로스네프트(Rosneft)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스산업의 첨병, 가즈프롬

가즈프롬(Gazprom)은 현재 세계 3위의 러시아 최대 국영 가스기업입니다¹. 1989년 고르바초프에 의해 설립될 당시에는 가스부(部) 산하 국영기업에 불과하였습니다. 가즈프롬은 고르바초프에 이은 보리스 엘친 집권 시기인 1993년 국영기업의 사유화 정책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지분의 50.002%를 확보함으로써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후 푸틴은 가즈프롬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고, 가즈프롬은 푸틴의 절대적 지원 아래 석유, 건설 등 실물부문은 물론 은행, 보험 등의 금융과 언론 부문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¹ 가즈프롬은 고르바초프의 폐레스트로이카 시대인 1989년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국영 석유-가스통합회사에서 가스분야를 분리해 설립한 가스 콘체른(Gas Concern)입니다. 회사명은 가스산업을 뜻하는 ГАЗов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의 일부를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 10월에는 러시아 최대 부호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밀하우스 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던 러시아 5위의 민간 석유회사인 시브네프트(Sibneft) 주식 72.66%를 130.91억 달러에 반강제로 인수하여 석유부문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 후 시브네프트를 자회사인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로 흡수 합병한 가즈프롬은 2007년 러시아 전체 천연가스 생산의 84.4%인 5,519억 m³, 석유 생산의 9.6%인 4조 5,800만 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7월에는 푸틴이 ‘천연가스는 전략물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가이익보호를 위해 가즈프롬에 의해서만 수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가스수출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가즈프롬은 러시아 석유-가스전에서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가스와 기체 또는 액체 상태로 수송되는 가스에 대해 독점적인 수출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가즈프롬에 코빅타, 야쿠츠크 등 동부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에 대한 독점사업권자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신규 매장지 및 신규 탐사지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아래 가즈프롬은 2008년 4월 16일 현재 100% 지분소유 기업 74개, 50% 이상 지분소유기업 39개, 50% 이하 지분소유기업 41개, 기타 18개 등 총 172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회사로는 가즈프롬네트프(러시아 3위 석유회사), 가즈프롬방크(러시아 3위 은행), 가즈프롬미디어(최대 미디어그룹), 가즈프롬아비아(러시아 10위 항공사), 러시아 최대 보험회사인 소가즈(SOGAZ)보험이 있습니다. 가즈프롬의 임원진은 대부분은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3. 석유산업의 첨병, 로스네프트

로스네프트(Rosneft)는 현재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기업으로 러시아 정부가 75.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스네프트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석유부문 사유화 정책에 따라 소련의 석유가스부(Ministry of oil and Gas)의 후신인 Rosneftegaz가 소유한 자산에 기반하여 1993년 설립되었습니다. 엘친 정부시절 로스네프트는 잦은 경영진 교체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원유생산에 있어 그 규모가 약 1/3로 축소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푸틴 정부시절인 2001년 로스네프트는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고 생산물분배계약(Product Sharing Agreement)에 의한 석유부문 개발프로젝트 정부 대행업체로 선정되었고, 2002년부터는 사할린(사할린 프로젝트III, V), 카스피해, 동시베리아 지역 유전개발에 있어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취득하였습니다. 2004년 12월에는 푸틴의 유코스(Yukos) 해체를 통한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통제 강화전략에 따라 유코스의 자회사인 유간스크네프테가즈(Yuganskneftegaz)를 약 93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순식간에 루코일(Lukoil)에 이어 러시

아 2위 석유메이저 기업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². 그리고 2006년 6월 TNK-BP로부터 우드무르트네프트(Udmurneft)를 약 35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유코스의 남은 핵심 자회사인 톰스크네프트(Tomskneft)와 사마라네프테가즈(Samaraneftegaz)를 68억 달러, 64억 달러에 인수함에 따라 원유매장량, 원유생산 및 정제 등에 있어 루코일(Lukoil)을 제치고 러시아 최대 석유업체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4. 자원민족주의 심화를 위한 러시아 연방법률의 제·개정

2008년 4월 29일 발효된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의미를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전략기업 투자절차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동법에 명시된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전략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설립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기업 투자절차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i) 기상, 암호해독, 항공·우주, 핵 및 방사능 물질 처리, 비밀정보 취득, 무기 및 방위 산업 장비, 탄약, 병기, 실탄, 방역, 정보 보호, 통신서비스, 수산업, 지하자원에 관한 지질 조사 및 탐사, 채굴, 일정 범위 이상의 방송(TV, 라디오), 일정 규모 이상의 출판 등 42개 전략 산업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체') 및 (ii) 연방정부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굴권을 보유하는 기업(이하 '주요자원 개발 기업')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투자의 제한을 받습니다.

전략산업체의 경우 외국정부기관 투자자(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는 전략산업체 의결권의 25%미만까지, 그 외 외국인 투자자는 50% 미만까지 자유로운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 정부기관 투자자가 전략산업체 지분의 25% 이상 또는 그 밖의 외국인 투자자가 5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의 처분 등에 관하여 수탁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을 받습니다.

² 2004년 10월 러시아 조세당국은 유코스의 자회사인 유간스크네프테가즈(Yuganskneftegaz)에 95억달러 및 톰스크네프트(Tomskneft)에 3천 3백만 달러의 체납세금을 부과하고, 유코스의 체납세금 납부부진의 책임을 물어 유간스크네프테가즈를 공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내 소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유코스는 미국 파산법에 따라 미국 휴스턴의 파산법원에 공매중지신청을 하였고, 미국 휴스턴 법원은 12월 16일 이를 받아들여 10일간의 공개매각 잠정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공개매각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개매각절차를 강행하였고, 12월 19일 공개입찰에서 '바이칼 파이낸스 그룹(Baikal Finance Group)'이 약 93억달러에 유간스크네프테가즈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로스네프트가 바이칼 파이낸스 그룹을 인수함으로써 유간스크네프테가즈의 지분 100%는 국영화가 된 것입니다. 바이칼 파이낸스 그룹은 유코스 강제매각의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위해 급조된 유령회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코스 강제 매각에 대해 설명하는 공개석상에서 이 회사의 이름을 잘못 언급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주요자원 개발 기업의 경우 외국정부기관 투자자는 5%미만까지, 그 밖의 외국인 투자자는 10%미만까지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합니다. 외국 정부기관 투자자가 주요자원 개발 기업 지분의 5% 이상 또는 그 밖의 외국인 투자자가 10%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기업 투자절차법은 외국정부기관 투자자의 전략기업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정부기관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략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취득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2008년 5월 「국가의 방위 및 안보 확보에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에 관한 연방법」 제정과 관련한 러시아연방 개별법규의 개정 및 효력상실에 관한 연방법률」을 공포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지하자원 개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① 원유 7,000만톤 이상, 가스 500억m³ 이상이 매장된 개발구역의 채굴면허를 소유한 회사, ② 금 50톤, 구리 50만톤 이상 매장된 개발구역의 채굴면허를 소유한 회사, ③ 다이아몬드, 우라늄, 백금, 니켈, 코발트, 리튬 플래티늄 등 대륙붕에 위치한 개발구역에 대한 채굴 면허를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하자원 개발구역에서 위에 언급된 광물이 발견될 경우 러시아연방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한 기존 광업권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략광구(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량이 확인된 육상광구와 대륙붕 매장지 등을 전략광구로 지정함)에 대해서 지분율 50% 미만의 합작기업의 형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적법한 광업권 면허에 따라 지질조사를 하던 중에 전략광구를 발견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50% 이상의 지분을 러시아연방 국영기업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해양광구의 개발권은 이 분야 5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만 주어지는데, 현재 러시아 국내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앞서 설명한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 두 곳 뿐입니다.

이렇듯 러시아가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경제 개발과 지역 인프라 구축의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의 사전 협력 없이는 러시아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Jisung Horizon

(Vietnam LIVE!)

베트남 법률과 실무의 괴리



한승혁 호주변호사

지난 달 고객사의 자금 담당 부장께서 하소연을 해오셨습니다. 해당공단관세국(The Customs of XX Industrial Zone)의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일 보다 하루 전 이 관세국에서 지정한 납부구좌로 고객사의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했는데 얼마 후, 지급 기일이 4일 초과되어 관세국의 구좌로 입금이 되었다는 이유로 4일간의 지연지급에 대한 벌과금 약 USD50을 부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벌과금의 가액이 미미하고 공연히 작은 액수를 가지고 관세당국과 마찰을 빚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 지급하긴 했지만 법률적으로 이러한 벌과금의 부과가 타당한지 아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고지서상의 세금 납부기간은 2008년 8월7일로부터 30일입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은 2008년 9월6일이지만, 해당일이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9월8일 월요일을 납부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사는 9월5일 고객사의 거래은행을 통해 지정된 관세당국의 구좌로 세금액의 송금을 요청하였고 송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고지서 상에는 납부은행 또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9월15일자 벌과금 통지서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세금이 9월10일에 해당공단관세국의 지정구좌로 입금되었고 지정구좌로 입금된 날을 세금 지급일로 간주하여 지급기한일인 9월 6일보다 4일 뒤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4일 지연지급에 대한 벌과금 약 USD50을 부과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해당공단관세국의 고지서에 납부은행 또는 기관을 특정하고 있을 경우, 특정된 은행이나 기관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 지연지급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은행이나 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사의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했을 경우, 고객사의 거래은행에 세금액의 송금을 요청하고 송금 확인을 받은 날이 세금을 지급한 날이 됩니다(Article 46.1 of Law on Tax Management¹). 따라서 관세당국의 지연지급 판단과 그에 따른 벌과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사는 관세국에 이에 대한 환불 요청 신청을 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러한 관계당국의 행정적 착오(?)의 한 예가 베트남 현지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투자자 분들께는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지의 법적용이나 관행에 맞서다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아니면 침 한 번 끌꺽 삼키고 눈 한 번 깔끔 감고 관공서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최소한 불이익은 당하지 않게 하느냐의 심적•판단적 '갈등'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적 관점에서 전자 또는 후자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 앞서 최소한 현지법에 따라 나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를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한 후 최종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 관계 당국도 사회적 시스템과 외국인의 투자 환경 개선과 발전에 더 신속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를 위해 베트남 현행법과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베트남 관계 당국과의 대화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jisung horizon

¹ Article 46.1 In case of tax payment via bank transfer, the day of tax payment is determined to be the date when the State Treasury, commercial bank, credit institution or other services providing company records a confirmation on tax payment documents of the tax payers.

(주목! 이 판례)

내기골프의 경우 도박죄 성립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6도 736 판결
- 사건명: 상습도박{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 1, 2는 각 무직이고, 피고인 3은 농업에 종사하는데 2003년 7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 4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골프장에서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전·후반 18홀 동안 1타당 일정 금액을 승금으로 거는 '스트로크 방식'과 전·후반 최소타로 홀인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계 방식'의 내기골프를 하였습니다.

즉 먼저 피고인들은 2002년 12월 16일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서, 피고인 1은 93타, 피고인 2는 91타, 피고인 3은 85타, 피고인 4는 85타로 각 핸디캡을 정하고, 전반 9홀 게임 중 1타당 50만원, 동점인 경우 배판으로 1타당 100만원, 후반 9홀 게임 중 1타당 100만원, 동점인 경우 배판으로 1타당 200만원을 승금으로 승자에게 주고, 전반 9홀 게임 최소타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500만원, 후반 9홀 게임 최소타 우승자에게 상금 1천만원을 주기로 정한 후, 위와 같은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한 것입니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피고인 4가 1억 1천만원을 패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이 2004년 5월 21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골프경기를 하면서 판돈으로 걸은 합계 금액은 피고인 3의 경우 총 26회에 걸쳐 합계 6억여 원 상당,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8억여 원 상당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상습도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의미에 관해 일관되게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해 왔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 2151 판결 등),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쳐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 2096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된 주장은 "내기골프의 경우 우연성이 없으므로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우연'이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내지 이에 관하여 승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왔지만, '우연'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견해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박죄에 있어서 우연의 의미란 무엇이고,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연성을 요하는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2. 1심 법원의 판단: 무죄판결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고단 4361 판결).

① 운동경기, 바둑, 장기 등과 같이 당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조건, 역량, 숙련도, 재능 등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의 경우 참가자들이 결국 기능과 기술을 다하여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도박죄의 성립은 종래에 그 도박성이 인정되어 온 화투, 카드, 카지노 등과 같이 당해 승패의 귀추에 있어 지배적이고도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특히, 화투·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지게 될 패의 결정부터 우연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에 한정되어야 할 것 이지, 운동경기와 같이 승패의 전반적인 부분은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만 우연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내기골프는 그 승패 여부가 피고인들의 기량과 재능에 주로 지배되는 운동경기의 일종이어서 그 승패에 관련하여 재물을 걸었다 하여도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국가대표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둘 때 연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경기에 임하는 행위, 프로운동선수가 이른바 마이너스옵

션계약에 따라 경기에 임하는 행위, 스킨스(Skins) 방식의 골프경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골프 선수끼리 서로 재물을 걸고 하는 골프 경기도 모두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유죄판결

(1) 검사의 항소 이유

검사는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기골프와 같이 개인의 기량과 실력이 승패의 주요요인이 되는 운동경기의 경우에도 참가자들이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그 승패의 결과에 돈을 건다면 이는 도박에 해당한다.

② 내기골프가 비록 다른 도박의 방식에 비하여 우연성이 다소 적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그 결과에 우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도박이나 운동경기의 승패결정에 공통적으로 우연과 기량의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참가자들 사이에 실력차에 따라 핸디캡의 조정까지 마치고 내기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승패의 전반적인 부분이 개인의 기량과 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내기골프는 도박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내기골프도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징역형(피고인 1, 2, 4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 2065 판결).

①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하여도 매 흘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② 골프가 진행되는 경기장은 자연상태에 가까워서 선수가 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나 거리가 다소간 달라짐에 따라 공이 멈춘 자리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기 쉽고 이는 경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여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

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는 없다.

③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선수들의 기량, 투자, 노력 등에 대비되어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우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치평가와 무관한 개념이어서 선수들의 기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이 그 결과를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을 때에도 이를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의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골프를 비롯한 운동경기와 화투, 카드, 카지노 등 사이에 승패의 결정에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라는 요인과 이와 무관한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이고, 설사 기량 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핸디캡의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자 간에 승패의 가능성은 대등하게 하거나 승리의 확률이 낮은 쪽에 높은 승금을 지급하고 승리의 확률이 높은 쪽에 낮은 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물을 거는 당사자 간에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실제로 우연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도박의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⑤ 내기골프에 있어서 승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내기골프를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⑥ 연금, 포상금, 마이너스옵션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나 프로구단 등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재물은 긍정적인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도박의 승금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스키스 방식의 골프경기도 도박에 해당할 수 있고, 프로골프 선수끼리 내기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도박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여기에 어떤 불합리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대법원의 판단 및 대상판결의 의의

(1) 대법원의 판단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먼저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제한 다음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내기골프가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도박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3은 26회에 걸쳐, 나머지 피고인들은 32회에 걸쳐 원심 판시와 같은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는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의의

1심 판결과 대상판결을 비교하여 볼 때, 1심 법원은 ‘우연의 의미’에 관해 ‘결과의 객관적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 비해, 대법원(및 항소심 법원)은 ‘결과의 주관적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전제 하에서 ‘도박이 성립하기 위한 우연성의 정도’에 관해 1심 법원은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될 것을 요한다’고 판단한 데 비해, 대법원은 ‘다소라도 우연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도박죄에 있어서 우연의 의미’와 ‘승패 결과에 있어서 우연성의 정도’에 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그 견해를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Jisung Horizon

5. 다운로드: [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6도 736 판결](#)

(최신 법령)

1.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62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98호)

기존에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건축법상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경우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마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75호)

개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과 그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해소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Jisung Horizon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8년 가을 체육대회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9월 18일 통합 이후 처음으로 전체 변호사·전문가 및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줄다리기 및 둛자리 올라서기, 이어달리기 등의 게임으로 상호간 협동성과 실력을 겨뤘으며, 이어달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백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지평지성 구성원 및 임직원 간의 상호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회 체육대회. 2008.10.18)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8년 가을 산행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는 11월의 첫날 청계산 산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 빛이 완연한 청계산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회 가을 산행. 2008.11.01).

(지평지성 단신)

이호원 대표변호사, "제1회 중재실무연수과정" 강연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는 11월 3일 대한상사중재원 주최로 열린 "변호사 의무전문연수 인정을 위한 제 1 회 중재실무연수과정"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집행요건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 강연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의 중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Jisung Horizon

[강의자료]

- 仲裁判定의 取消事由와 執行要件에 관하여

최승수 변호사,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발전 위한 토론회' 발제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는 10월 29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국 탤런트 에이전시 규제법 고찰'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들의 영세성과 비전문성, 불합리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연예산업이 발전된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사업자, 제작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각계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Jisung Horizon

[관련기사]

-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지평지성 단신)

김성수 변호사, 서울시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의거 2008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주로 노동 및 의료 문제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위촉 받아서 하게 됩니다. Jisung Horizon

김범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 발표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판례연구발표회'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가 직접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김범희 변호사가 발표한 자료는 최근 진행하였던 직접 진행하였던 소송 과정중 연구한 자료와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는 향후 동종 소송에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법률실무연구회의 판례연구발표회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개최되고 있습니다. Jisung Horiz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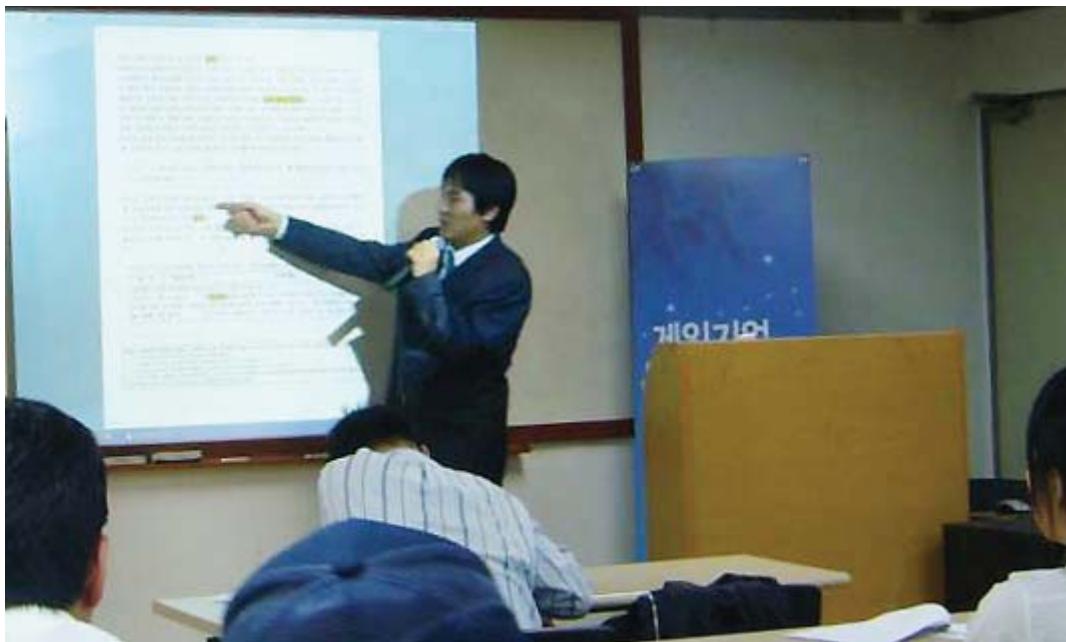
(지평지성 단신)

김범희 변호사, '게임기업법무전문가 양성강좌 - 지적재산권법'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는 지난 10월 15일과 10월 22일, 양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게임기업 법무전문가 양성강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요, 저작권 분쟁, 개인정보의 보호 등 게임 기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쟁점에 관해 강의 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총 10회에 걸쳐 개최한 것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게임기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게임기업의 법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 '게임기업 법무전문가 양성 강좌' 강의)

(지평지성 단신)

이소영 변호사, '케이블 TV 저작권 워크샵'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케이블TV 저작권 워크숍"에 참석하여 음악저작물 방송 사용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유의사항"에 대해 강의 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케이블TV(SO, PP) 저작권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발전기금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Jisung Horizon

정철 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는 10월 31일, 국제거래법학회 산하 국제에너지법연구회가 '한중 에너지법정책의 최근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법규와 최근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에너지법학계의 전문가들이 한국과 중국의 에너지 산업 관련 법률규제 및 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양국의 에너지법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국제에너지법연구회 회원인 정철 변호사는 한국의 에너지 관련 법규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관련 입법 동향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Jisung Horizon

[발표자료]

- 한국의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법규 및 최근의 동향

(지평지성 단신)

박성철 변호사,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담당자 워크숍'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성철 변호사는 지난 10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판례를 통해 본, 교육행정과 소송"을 강의하였습니다.

박성철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최근 교육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판결례를 들어 소송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점을 지적하고, 판례에 바탕이 되는 행정법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Jisung Horizon



박성철 변호사,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담당자 워크숍" 강의 (2008.10.31)

(지평지성 단신)

노상범 전문위원, '한국채권연구원 제7기 고급 PF전문가 과정'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노상범 전문위원은 11월 6일, 한국채권연구원이 주관하는 제7기 고급 PF전문가과정에서 '동남아 부동산 개발시장의 현황 및 우리 건설업체, 금융기관의 PF 진출전략'에 대해서 강의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공공기관, 건설 및 시행업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ASEAN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부동산개발, 투자 시 Risk 및 Risk Management 방안, 동 국가의 부동산법 제·담보법제 및 외국인 투자법제 등에 실무와 이해를 넓히고자 마련 되었습니다. [isung Horizon]

노상범 전문위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노상범 전문위원은 2008년도 2학기(9월~12월)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금융법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노상범 전문위원은 부동산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부동산금융에 관련된 기본적 법규, 즉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택금융공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과 관련한 법적, 실무상 쟁점과 나아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해외부동산개발 및 투자, 부동산금융신상품으로서 Synthetic CDO, Covered Bond 등과 관련한 법적 이슈 등을 강의 합니다. [isung Horizon]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변호사, 연극'쉬어 매드니스' 공연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원·최수진·박성철·임윤선 변호사는 10월 23일,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열린 관객참여형 추리극 '쉬어매드니스(Shear Madness)'에 출연하였습니다.

미국에서 28년간 공연되고 있으며 작품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쉬어매드니스(Shear Madness)'는 관객들이 직접 극에 참여하여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실험적인 연극입니다.

4명의 용의자를 변론하는 변호사님들의 열연에 관객들이 뜨겁게 호응하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Jisung Horizon



(쉬어 매드니스 공연中 한 장면, 2008.10.23)

(영입인사)

김희석 변호사



□ 학력사항

- 제주 오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사항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Deloitte 안진 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세무자문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소속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벌써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합류하게 된 김희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조세자문본부에서 자문변호사로 일하여 오다가 이번에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조세팀에서 새로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회계 및 세무 실무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관심과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sung Horizon

(영입인사)

원성철 중국변호사



□학력사항

-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제11고등학교 졸업
- 중국북경대학 법률과 졸업

□경력사항

- 중국 변호사자격시험 합격 (2007년)
- 한국보광화학 대련사무소 중국시장 개척과 담판 담당
- 요녕성 동방로펌 대련사무소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중국법률고문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3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신입한 원성철
중국 변호사입니다.

저는 중국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중국 요녕성 동방로펌 대
련사무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교포 변호사
로서 한국 관련 업무에 몰두하려는 생각으로 이번에 법무
법인 지평지성 상해지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능한 선배 변호사님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된 데 감사 드리며, 재중 한국기업이 갖고 있는
법률리스크의 해소와 분쟁의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종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남분사무소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2층·14층 Tel : 02)2009-7500? Fax : 02)2009-752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종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610

상해 지사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호치민시티 지사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910-7510 Fax : 84-8-910-7511